

자랑스런동명인상수여규정

2016.05.30.제정 2018.07.01.일부개정 2019.10.01.일부개정 2021.06.01.일부개정
2023.09.01.일부개정

<홍보팀>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교직원, 재학생 및 동문으로 말
은 바 직분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“자랑스런 동명인 상”(이하
“동명인 상”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자격) 동명인 상의 수여 대상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, 재학생 및 동문으로 대학 문화와 학
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한다.

제3조 (선정 절차) ① 동명인 상 수상 대상자의 추천은 추천자가 추천서 【별지 제1호 서식】를
작성하여 총무팀으로 제출한다.

② 동명인 상 수상자 선정은 다음의 각 구성원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 한다.

1. 교원 : 교원인사위원회
2. 직원 : 직원인사위원회
3. 학생 : 학생지도위원회
4. 동문 : 동명인상선정위원회

③ 동명인상선정위원회는 **부총장**, 대학원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**입학홍보처장**, 사무
처장,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개정 2018.7.1.,
2019.10.01., 2021.6.1., **2023.9.1.**)

제4조 (포상 시기) 포상은 학기당 2회 이내 또는 연간 4회 이내로 실시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
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.

제5조 (포상 인원 및 포상 내용) 포상 인원은 회별 4명 내외로 하며, 상장 및 소정의 상금을 수여
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